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10. 김현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 2025. 9.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9회 국회(정기회)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1. 24.)

○ 제430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2. 1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1차 전체회의(2025. 12. 1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현의원)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정보주

체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사항에 대한 개별적 통지 없이 홈페이지에 간략한 안내만을 게시한 바 있음. 이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2차 피해나 금융사기 등의 추가적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큰 상황임.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유출 직후 즉시 피해로 이어지기보다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스미싱,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수의 경로를 통해 이동·가공·재판매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유출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함(안 제34조제2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없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의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부대의견

보호위원회는 과징금을 강화한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실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에 활용하는 기금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